

의안번호	제705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
번호

705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은 삼성전자의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여 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(주거, 교육, 상담 등)하는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, 道↔삼성전자↔사회복지공동모금회↔한국아동복지협회 충북분소 간 협약을 체결하여 협회에서 센터 설치 후 도재산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취득규모는 연면적 1,247.25㎡, 사업비는 35억원임
-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은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『남부권 성장동력으로 농업』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8기 공약 일환으로 분원 설립에 의한 지역농업 역량 강화,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 규모는 연면적 3,567㎡, 사업비는 168억원임
 - ※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되 원안의결 되었으나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 4항에 의거 연면적 30%이상 감소(당초 5,745㎡ → 변경 3,567㎡), 기준가격 30%이상 증액(당초 103억원 → 변경 168억원)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여 안건 상정
-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은 2005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경제수명 도래에 따른 정비소요 및 결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산악 지역이 많은 충북 특성상 돌풍, 계곡풍 등 기상극복능력이 우수한 다목적 중형헬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대이륙중량 4,300kg이상, 사업비는 360억원임
-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》

일반회계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00, 스타에이치
 - ※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면적 분양
- 사업기간 : 2022. 11. ~ 2025. 10.
- 시설규모
 - (청주) 주거공간 20개실, 사무·공유공간 3개실
 - * 충주시(생활실 5개 제외) 매물 물색 중, 1차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미선정
- 사업비 : 35억원(매입, 리모델링, 기자재 구입비 등)
- 취득방법 : 기부채납
 - 기부자 :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북도 분소 (대표 권현숙)
 - 기부시점 : 사업 계약 후 3년(2025년 중)

《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》

일반회계

- 위 치 :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91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21. 5. ~ 2025. 2.
- 주요내용 :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건물 취득
- 총사업비 : 168억원(도비) ◆ 부지매입비 별도(군비)
 - 설계비 455백만원, 건축비 14,053백만원, 철거비 1,000백만원, 감리비 1,360백만원
- 신축규모 : 3,567m²
 - 주요시설: 연구동(2,503m²), 관리사(732m²), 농자재 창고(332m²)

《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》

특별회계

- 위 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766-1
- 사업기간 : 2025. 1. ~ 2027. 12.
- 사업내용 :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취득
- 사업비 : 360억원(도비 50%, 소방안전교부세 50%)
- 사업규모 : 14인승 이상, 최대이륙중량 4,300kg이상, 항속거리 500km이상 등

3.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2건	4,814.25	20,371,966		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00	1,247.25	3,503,966	2025	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	한국아동 복지협 회충북 분소	기부 채납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91번지 일원	3,567	16,868,000	2025	충청북도농업기술 원 분원 신축 준공	-	신축
	기타							
3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기	취 득 사 유	취 득 재산 전 소유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1식	최대이륙중량 4,300kg이상 (소방청 기본규격)	36,000,000	2027	소방 헬기 구매에 따른 취득	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	
1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766-1	최대이륙중량 4,300kg이상 (소방청 기본규격)	36,000,000	2027	소방 헬기 구매에 따른 취득	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	
2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계법령발취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의2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 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